

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 . . . 자에 임차기간 20 . . . 부터
20 . . . 까지로 위 임차보증금과 차임으로 별지목록 건물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
니다.

신청인은 임차기간 만료일전 20 . . . 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통지하였으나
지금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알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라는 답변만하고 임차보
증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.

신청인은 임차보증금의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
것입니다.